

| 독서 |

| Preview |

| 인터넷 ID와 관련된 명예훼손 |

### 주제이동

이 지문은 리프킨의 인터넷 ID의 명예 주체성을 인정하는가와 관련된 쟁점을 다루는 법학 지문이다. 주목할 지점은 지문 초반부에 자기 정체성, 가상 공간, 사회적 상호 작용에서의 자기표현 등 심리학적 소재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다가 [3문단]부터 법학 지문으로 주제를 바꾸는 부분이다. 이러한 부분은 25년도 평가원 기출 독서 지문에서 많이 볼 수 있다.

### 법률요건 · 법률효과

고전적인 법학 지문답게 법률요건과 법률효과가 출제되었다. 따라서 독자는 무엇이 요건이고 무엇이 효과인지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각각 명예훼손·모욕에 대하여 어떤 법률요건과 법률효과를 제시하는지 알 수 있다.

### 쟁점과 논증

하나의 쟁점에 대해 여러 의견이 등장하고, 독자는 각 의견의 근거와 결론을 확보하는 습관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는 <인터넷 ID의 명예 주체성을 인정하는가>에 대해 긍정설과 부정설의 주장과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 
- 의례적 儀禮的
  - 형식이나 격식만을 갖춘 것.

- 
- 위상 位相
  -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는 위치나 상태.

- 
- 위축 萎縮
  - 어떤 힘에 눌려 줄어들고 기를 펴지 못함.

- 
- 명예 名譽
  -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이름이나 자랑. 또는 그런 존엄이나 품위.

- 
- 일원적 一元的
  - 특정한 문제나 사항을 오직 하나의 원리로 설명하는 것.

- 
- 성립 成立
  - 일이나 관계 따위가 제대로 이루어짐.

- 
- 판시하다 判示하다
  - 어떤 사항에 관하여 판결하여 보이다.

- 
- 헌법 소원 憲法訴願
  - 헌법 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 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일.

### 길라잡이

모르는 어휘가 있다면 정리하세요!

메모

Blank memo area with a dotted border.

리프킨은 사회적 상호 작용에서의 자기표현은 본질적으로 연극적이며, 표면 연기와 심층 연기로 ㉠ 이루어진다고 언급했다. 표면 연기는 내면의 자연스러운 감정보다 의례적인 표현과 같은 형식에 집중하여 연기하는 것이고, 심층 연기는 내면의 솔직한 정서를 ㉡ 불러내어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인터넷에서의 커뮤니케이션에 주목한 리프킨은 가상 공간에서 자기표현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가상 공간의 특성에 주목한 연구자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고유한 존재로서의 위상을 뜻하는 자기 정체성이 가상 공간에서 다양하게 ㉢ 나타난다고 본다. 가상 공간에서는 익명성이 작동하므로 현실에서 위축되는 사람도 적극적으로 자기표현을 할 수 있다. 아울러 현실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 감추고 다른 인격체로 활동하거나 현실에서 억압된 정서를 공격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게임 아이디, 닉네임, 아바타 등 가상 공간에서 개별적 대상으로 인식되는 '인터넷 ID'에 대한 사이버 폭력이 ㉤ 넘쳐 나는 현실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사이버 폭력과 관련하여, 인터넷 ID만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공격이 있을 때 가해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이는 인터넷 ID가 사회적 평판인 명예의 주체로 인정될 수 있는가와 관련된다. 인터넷 ID의 명예 주체성을 ㉦ 인정하는 입장에 따르면, 자기 정체성은 일원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와 가상 공간에 걸쳐 존재하고 상호 작용하는 복합적인 것이다. 인터넷에서의 자기 정체성은 사용자 개인의 자기 정체성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가진 인터넷 ID의 명예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 반면 ㉧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 따르면, 생성·변경·소멸이 자유롭고 복수로 개설이 가능한 인터넷 ID는 그 사용자인 개인을 가상 공간에서 구별하는 장치에 불과하다. 인터넷 ID는 현실에서의 성명과 달리 그 사용자인 개인과 동일시될 수 없고, 인터넷 ID 자체는 사람이 아니므로 명예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 대법원은 실명을 거론한 경우는 물론,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주위 사정을 종합할 때 지목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제3자가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성립한다고 판시해 왔다. 이를 수용한 헌법재판소에서는 인터넷 ID와 관련된 명예훼손·모욕 사건의 헌법 소원에 대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결정에서 ㉩ 다수 의견은 인터넷 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없다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반면 인터넷 ID는 가상 공간에서 성명과 같은 기능을

하므로 제3자의 인식 여부가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 소수 의견도 제시되었다.

1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심층 연기는 내면의 진솔한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 형식에 집중하는 자기표현이다.
- ② 리프킨은 현실 세계보다 가상 공간에서 자기표현이 더욱 왕성하게 드러난다고 보았다.
- ③ 가상 공간에서 개별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아바타는 사이버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 익명성은 가상 공간에서 자기 정체성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가상 공간의 특성이다.
- ⑤ 가상 공간에서의 자기 정체성은 현실에서의 자기 정체성과 마찬가지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

15.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자기 정체성을 단일하고 고정적인 것으로 파악하겠군.
- ② ㉠은 ㉡과 달리 인터넷 ID에 대한 공격을 그 사용자인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고 보겠군.
- ③ ㉡은 ㉠과 달리 인터넷에서의 자기 정체성과 현실 세계의 자기 정체성이 상호 작용을 한다고 보겠군.
- ④ ㉡은 ㉠과 달리 인터넷 ID는 복수 개설이 가능하므로 자기 정체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다고 보겠군.
- ⑤ ㉠과 ㉡은 모두, 인터넷 ID마다 개인의 자기 정체성이 다르다고 보겠군.

1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인터넷 카페의 이용자 A는 a, B는 b, C는 c라는 ID를 사용한다. 박사 학위 소지자인 A는 □□ 전시관의 해설사이고, B는 같은 전시관에서 물고기 관리를 혼자 전담한다. 이 전시관의 누리집에는 직무별로 담당자가 공개되어 있다. 어떤 사람이 □□ 전시관에서 A의 해설을 듣고 A의 실명을 언급한 후기를 카페 게시판에 올리자 다음과 같은 댓글이 달렸다.

A의 해설에 대한 후기

↳ b A가 박사인지 의심스럽다. A는 #~#.

↳ a □□ 전시관에서 물고기를 관리하는 b는 #~#.

↳ c 게시판 분위기를 흐리는 a는 #~#.

(단, '#~#'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표현이고 A, B, C는 실명이다. ID로는 그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알 수 없으며, A, B, C의 법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는다.)

- ① ㉠은 B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C는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겠군.
- ② ㉡는 B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A는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겠군.
- ③ ㉢와 ㉣는 A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같게 보겠군.
- ④ ㉤와 ㉥는 B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같게 보겠군.
- ⑤ ㉦, ㉧, ㉨가, C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판단한 내용이 모두 같지는 않겠군.

17.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완성(完成)된다고      ② ㉡: 요청(要請)하여
- ③ ㉢: 표출(表出)된다고      ④ ㉣: 기만(欺瞞)하고
- ⑤ ㉤: 확충(擴充)되는

메모

Blank memo area for notes.

[1-1] 리프킨은 <sup>전체</sup> 사회적 상호 작용에서의 자기표현은 본질적으로 속성[연극적]이며, <sup>분류1</sup>[표면 연기]와 <sup>분류2</sup>[심층 연기]로 이루어진다고 언급했다.

**잡기술(나열)**

필자는 서두에 생소한 용어(표면 연기, 심층 연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때 독자는 나열된 순서대로 필자가 용어들을 설명해 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잡소리(연극적)**

연극적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사람들이 마치 배우가 무대 위에서 배역을 연기하듯 자신의 말, 표정, 행동을 의식적으로 구성하고 연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살면서 (학교, 직장, 가정, 인터넷 등) 여러 집단을 옮겨 다닌다. 이 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각 무대에 맞는 역할을 수행한다. A라는 사람이 가정에서는 아들이고, 학교에서는 학생, 직장에서는 월급쟁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때 표면 연기와 심층 연기가 뒤섞인다. A라는 사람이 있다. 그는 집에선 살가운 아들, 학교에선 활발한 학생, 바깥에선 무뚝뚝한 직원이 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리프킨은 사회적 상호작용 자체가 본질적으로 연극적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1-2] 표면 연기는 <sup>정의</sup> [내면의 자연스러운 감정보다 의례적인 표현과 같은 형식에 집중하여 연기하는 것]이고, 심층 연기는 <sup>정의</sup> [내면의 솔직한 정서를 불러내어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잡기술(형식/실질)**

형식과 실질 관계를 고려하면, 표면 연기는 형식적인 것, 심층 연기는 실질적인 것이라 범주화하여 이해할 수 있다.

**잡기술(대비)**

‘보다’를 고려하면, <내면의 자연스러운 감정>은 <의례적인 표현과 같은 형식>과 대비 관계이고 이는 심층 연기에 속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내면의 자연스러운 감정’이 ‘내면의 솔직한 정서’와 문맥상 동의어임을 알 수 있다.

표면 연기	~(내면의 자연스러운 감정)	형식에 집중
↓	=	
심층 연기	내면의 솔직한 감정	⇒ 진정성 보임

[1-3] <sup>부분</sup>인터넷에서의 커뮤니케이션에 주목한 리프킨은 가상 공간에서 <sup>가상 공간 특징</sup>[자기표현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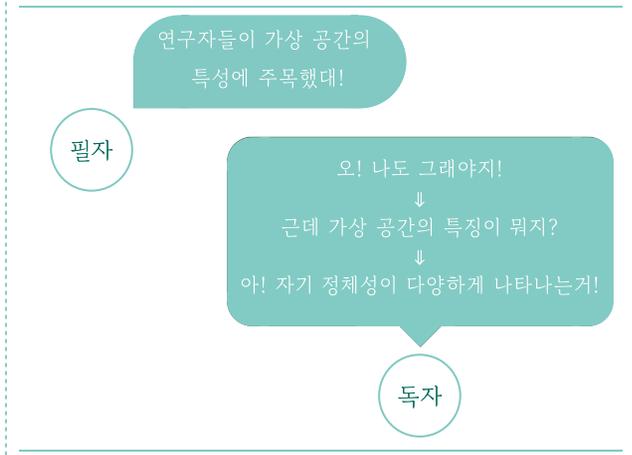
**잡기술(포함)**

‘커뮤니케이션’과 [1-1]의 상호작용이 동의어임을 고려하면, ‘사회’와 ‘인터넷’의 관계를 재조명할 수 있다. [1-1]의 사회는 인터넷을 포괄하는 상위 범주이다. 즉 이때의 사회는 전체가 되고 인터넷은 부분이 되는 것이다.

[2-1] 가상 공간의 특성에 주목한 연구자들은 <sup>정의</sup>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고유한 존재로서의 위상]을 뜻하는 자기 정체성이 <sup>특징</sup> [가상 공간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본다.

**잡기술(초점)**

여기에서 <주목한>은 필자가 독자에게 명시적으로 힌트를 주는 부분이다. 따라서 독자는 가상 공간의 특성에 주목하고, [2-1]의 가상 공간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 그 특징임을 알 수 있다.



**잡소리(자기 정체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자기 정체성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한 사람이 현실 세계에서 갖는 하나의 정체성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 공간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이용하여 여러 모습을 만들어 내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잡소리(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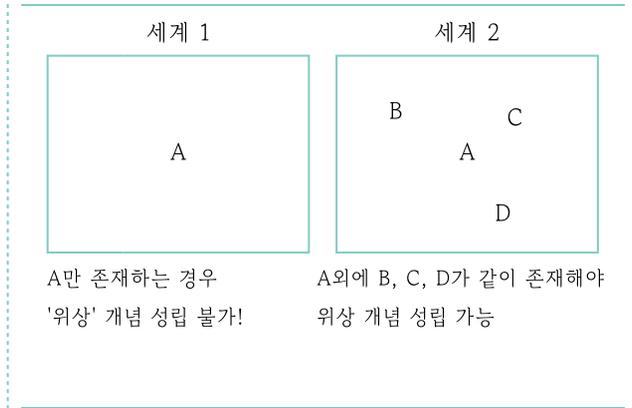
위상은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는 위치나 상태>를 의미한다. 사전적 정의를 보더라도 위상은 '다른 사물(지문에서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존재해야 성립하는 개념이다.

어떤 세계에 아무것도 없이 단 하나의 개체만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자. 이때 위상이라는 개념이 성립하긴 힘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다. 이때도 역시 '국제 사회'라는 일정한 국가들의 집합을 제시해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위상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하면 제시문에서 자기 정체성의 개념에 대해 깊은 이해가 가능하다. 자기 정체성은 사람들이 모인 사회 속에서 드러나는 개인의 위상이다.

다음과 같은 도식을 참고해 보자.



[2-2] 가상 공간에서는 <sup>원인</sup> [익명성이 작동]하므로 <sup>결과1</sup> [현실에서 위촉되는 사람도 적극적으로 자기표현을 할 수 있다.]

**잡기술(포함)**

앞서 [1-1]에서의 ‘사회’와 [1-3]의 인터넷, 여기에서 현실이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graph TD
      A[사회 [1-1]] --- B[인터넷 [1-3]]
      A --- C[현실 [2-2]]
    
```

**잡소리(초점)**

[2-1]에서 가상 공간의 특성에 주목한 독자는 <익명성이 작동해 현실에서 위촉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자기표현을 함>이 가상 공간의 특성임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이것이 바로 <자기 정체성이 가상 공간에서 다양하게 나타내는 양상>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잡소리(익명성)**

익명성이란 인터넷 등 가상 공간에서 개인의 실명이나 신상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인터넷상에서 ‘ㅇㅇ’라는 닉네임을 사용한다면, ‘ㅇㅇ’을 사용하는 사람이 A라는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2-3] 아울러 <sup>결과2</sup> [현실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감추고 다른 인격체로 활동]하거나 <sup>결과3</sup> [현실에서 억압된 정서를 공격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잡기술(나열)**

‘아울러’, ‘거나’를 통해, 다른 인격체로 활동, 공격적으로 드러냄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이렇게 나열된 것들이 [2-2]에서 <자기 정체성이 가상 공간에서 다양하게 나타내는 양상>들을 알 수 있다.

**잡기술(인과)**

[2-2], [2-3]에서 익명성을 원인으로 결과들이 제시되어 있다.

원인	⇒	결과
익명성	⇒	1. 현실 위촉 적극 자기표현 2. 다른 인격체 활동 3. 공격적 표출

[2-4] <sup>부분</sup>[게임 아이디, 닉네임, 아바타 등] 가상 공간에서 개별적 대상으로 인식되는 <sup>전체</sup>['인터넷 ID']에 대한 사이버 폭력이 넘쳐나는 현실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잡기술(주제 이동)

필자는 '무관하지 않다(관련 있다)'를 고려하면, 필자가 글의 주제를 살짝 이동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여태까지 리프킨의 이론에 주목하다가 인터넷 ID에 대한 사이버 폭력으로 주제를 옮긴 것이다.

필자가 은근슬쩍 글의 주제를 변화시키는 것은 25년도 평가원 기출문제에 많이 출제된 서술 방식이다.

[4-1] 을사늑약 이후, 개화 논의는 문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로 이어졌다.

[25110409]

[3-1] <sup>쟁점1</sup>[사이버 폭력과 관련하여, 인터넷 ID만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공격이 있을 때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잡기술(쟁점)

법학 지문에서는 하나의 쟁점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독자는 그 쟁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찬/반 입장을 비교해야 한다.

[3-2] 이는 <sup>쟁점2</sup>[인터넷 ID가 사회적 평판인 명예의 주체로 인정될 수 있는가]와 관련된다.

잡기술(주제 이동)

'관련된다'를 고려하면, 필자가 다시 한번 주제를 이동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2-4]에서 확인한 부분이다.

잡기술(쟁점간의 관계)

서로 다른 쟁점이 제시된 경우, 독자는 이 쟁점 사이의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쟁점 A와 B가 제시된 경우, A에서 찬성 의견이 B에서 반대 의견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으로 A에서 반대 의견이 B에서의 찬성 의견이 될 수도 있으니, 항상 그 둘의 관계에 집중하자. 여기서는 [3-1]과 [3-2]의 쟁점이 출제되었는데, 이들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전자를 긍정적인 쪽은 후자에서 긍정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쟁점이 나오면 그 관계를 생각하면, 새로운 정보를 추론할 수 있다.

잡소리(명예)

명예는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이름이나 자랑. 또는 그런 존엄이나 품위>를 의미한다. 아까 설명한 위상과 관련지어 보자면, '높은 위상' 정도로 이해해도 좋다.

[3-2]의 쟁점을 보자. 만약 인터넷 ID를 명예의 주체로 인정한다면, [3-1]의 사례(인터넷 ID만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공격이 있는 경우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3-3] <sup>긍정설</sup> [인터넷 ID의 명예 주체성을 인정하는 입장]에 따르면, <sup>긍정설1</sup> [자기 정체성은 일원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와 가상 공간에 걸쳐 존재하고 상호 작용하는 복합적인 것]이다.

**잡기술(쟁점)**

[3-2]에서 쟁점 간의 관계를 끌고 내려오면, 인터넷 ID의 명예 주체성을 인정하는 입장은 쟁점1, 쟁점2 모두 동의하는 입장이다.

**잡기술(논증)**

일반적인 논리 시험 PSAT, LEET 추리논증과 달리 수능에서 출제되는 일부 논증은 주장과 근거의 엄밀한 구별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독자는 무엇이 주장이고 무엇이 근거인지 아주 엄밀하게 구별하려 드는 것보다 내용 단위로 체크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자기 정체성은 복합적인 것이다’라는 부분은 긍정설의 전제1로 분류해야 하지만, 실전성을 위해 ‘긍정설 1’로 분류하고 가는 것이 더 편리하다.

**잡소리(전제, 결론/ 근거, 주장)**

일반적으로 전제는 결론을 뒷받침하고, 근거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때 전제, 결론/ 근거, 주장은 ‘발화 여부’에 대해서 차이를 가진다. 즉, 어떠한 추론 과정이 머릿속으로 진행된다면, ‘전제, 결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것이 타인에게 표현된다면, ‘주장, 근거’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에 대해 엄밀히 구별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일상적으로는 혼용해서 사용한다. 따라서 이 책에서도 혼용해서 사용한다.

[3-4] <sup>긍정설2</sup> [인터넷에서의 자기 정체성은 사용자 개인의 자기 정체성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가진 인터넷 ID의 명예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

**잡기술(논증)**

여태까지의 긍정설의 논증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긍정설

1	자기 정체성: 현실 세계와 가상 공간에 걸쳐 존재하고 상호 작용하는 복합적인 것이다.
2	인터넷의 자기 정체성은 개인의 자기 정체성의 일부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

**잡소리(논증 기억법)**

누군가 무엇을 주장할 때는 주장과 근거에 주목하는 것은 당연시된다. 여기서도 인터넷 ID의 명예 주체성을 긍정하는 입장의 결론과 전제를 살펴볼 수 있다.

결론	인터넷 ID의 명예 주체성을 인정한다. (자기 정체성을 가진 인터넷 ID의 명예는 보호되어야 한다.)
전제1	자기 정체성은 일원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전제2	자기 정체성은 현실세계와 가상 공간에 걸쳐 존재하고 상호 작용하는 복합적인 것이다.
전제3	인터넷 자기 정체성은 사용자 개인의 자기 정체성의 일부이다.

그러나 실전에서 이렇게 하기 쉽지 않다. 이 지문에서 긍정설의 경우, 굉장히 쉽게 전제와 결론이 보이지만, 철학 지문 특히 동양 철학을 소재로 한 경우에는 결론과 전제가 명확히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법학에서 논증이 출제될 때 결론과 전제가 명확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철학에서 논증이 출제될 때는 딱 떨어지지 않는다.<sup>1)</sup>

그래서, 논증을 전제와 결론으로 끊어서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힘들다면, ‘아 이 부분은 긍정설1이고, 이 부분은 긍정설2가 되겠구나’처럼 내용 단위 정도로 끊어서 이해하는 것을 권장한다.

[3-5] 반면, <sup>부정설</sup>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 따르면, <sup>부정설1</sup> [생성·변경·소멸이 자유롭고 복수로 개설이 가능한 인터넷 ID는 그 사용자인 개인을 가상 공간에서 구별하는 장치에 불과]하다.

**잡소리(개인을 가상공간에서 구별)**

예리한 독자라면, '인터넷 ID가 복수로 생성 가능한데 어떻게 구별하지?' 같은 물음이 들었을 것이다. 복수로 인터넷 ID를 개설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개인을 가상공간에서 구별한다는 것은, 인터넷 ID로 개인을 역추적해서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인터넷 ID인 A와 B가 동시에 접속해 있을 때, A와 B가 실질적으로 다른 이용자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갑이 A와 B라는 아이디의 주인이라고 할 때, 갑이 A라는 아이디를 사용하고, 갑의 친구 을이 B 아이디를 사용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다른 사용자 임을 알 수 있다.

[3-6] <sup>부정설2</sup> [인터넷 ID는 현실에서의 성명과 달리 그 사용자인 개인과 동일시될 수 없고], <sup>부정설3</sup> [인터넷 ID 자체는 사람이 아니므로 명예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잡소리(논증)**

부정설도 사이 좋게 정리해 보자.

긍정설	
1	자기정체성: 현실 세계와 가상 공간에 걸쳐 존재하고 상호 작용하는 복합적인 것이다.
2	인터넷의 자기 정체성은 개인의 자기 정체성의 일부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
부정설	
1	인터넷 ID는 구별 장치에 불과하다.
2	인터넷 ID는 개인과 동일시될 수 없다.
3	인터넷 ID는 사람이 아니라 명예 주체성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얼추 비교하기 쉽다. 다만 실전에서 이런 표를 그리라는 것이 아니라, 지문 옆에 조그맣게 부정설1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것이고 세세한 비교는 독자의 머릿속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1) 25년도 수능에 출제된 결합지문 중 (나) 지문의 '엔푸', '천두슈', '장권마이'의 논증 과정만 봐도 전제와 결론을 엄격히 구분하기 쉽지 않다.

[4-1] 대법원은 **대법원**[**조건1-1**실명을 거론한 경우는 물론, **조건1-2**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주위 사정을 종합할 때 **조건2**지목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제3자가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효과**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성립한다고 판시]해 왔다.

**잡기술(논증)**

대법원의 논증을 법률요건과 법률효과로 구분해서 알아보자.

	법률요건	법률효과
Case1	거론(실명)	명예훼손 or 모욕
Case2	~거론(실명) 인식가능성(제3자)	명예훼손 or 모욕

물론 실제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 추가적인 요건이 존재하겠지만, 대법원이 주목한 것은 실명 거론의 여부에 따른 요건 차이이기 때문에, 제시된 부분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된다.

이때, 법률요건과 효과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의 쟁점을 놓치면 안 된다. 쟁점은 '인터넷 ID가 사회적 평판의 주체로 인정되는가?'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긍정설의 입장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

**잡소리(명예훼손과 모욕)**

25년도 평가원 기출문제에 명예훼손과 모욕이 중복되어 출제됐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문과 리뷰를 실어줬으니, 학생들은 가볍게 읽어보자.

**제307조(명예훼손)**

① <sup>2)법률요건</sup>[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sup>법률효과</sup>[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sup>법률요건</sup>[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sup>법률효과</sup>[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죄의 제1항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고, 제2항은 허위 사실 명예훼손이다.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sup>법률요건</sup>[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sup>법률효과</sup>[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sup>법률요건</sup>[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sup>법률효과</sup>[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sup>법률요건</sup>[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sup>법률효과</sup>[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sup>법률요건</sup>[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는] <sup>법률효과</sup>[처벌하지 아니한다.]

이는 25년도 9월 평가원에 출제된 소재이다. 이 조각 사유도 굉장히 중요하데, 헌법 제37조 제2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재이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국민의 자유를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할 때, 그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는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구체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할 때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11조(모욕)**

<sup>법률요건</sup>[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sup>법률효과</sup>[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의 법률요건을 나눠보면, (1) 공연히 (2) 사람을 (3) 모욕해야한다. 즉,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지 않고, 1대1 대화에서 타인을 모욕한다면 모욕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이때 헐박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이 고려될 수 있는데, 이러한 법 적용에 있어서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으니, 모욕죄도 알아두는 것을 권장한다.

[4-2] 이를 수용한 헌법재판소에서는 <sup>헌법재판소</sup> [인터넷 ID와 관련된 명예훼손·모욕 사건의 헌법 소원에 대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잡기술(논증)

‘이를 수용한’을 고려하면, 헌법재판소 역시 대법원의 입장과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도 앞서 쟁점에 대해 긍정설에 가까운 입장을 알 수 있다.<sup>3)</sup>

잡소리(헌법 소원)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에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헌법 소원은 국가 권력(입법·행정·사법 작용)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그 구제를 받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기하는 특별한 소송절차이다.

쉽게 말해, 무언가 국가에 의해 피해를 봤을 때, 헌법재판소에 혼내달라고 하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 행정소송이나 민·형사상으로 구제되지 않는 영역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역할을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잡소리(2007헌마461)

인터넷 ID와 관련하여 명예훼손·모욕 사건과 관련한 헌법 소원의 대표적인 예시를 적어왔다.

갑은 네이버 뉴스에 댓글을 달았는데, 신원 불명의 사람들이 그 댓글로 갑을 모욕했다. 갑은 불기소처분<sup>4)</sup>을 받고 항고<sup>5)</sup>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쉽게 말해, 갑이 피해를 본 사실에 대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검사가 그 사건을 기소하지 않았다.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몇 번 다시 재판을 하고, 결국 헌법소원까지 넘어온 것이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댓글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있어 명예의 주체인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를 기각했다.

관련 판례 번호를 적어왔으니 관심 있는 독자들을 찾아보길 바란다.

2) 법령에서 ①은 ‘항’으로 읽는다.

3) 정확히 헌법재판소가 수용한 것은 제3자의 인식가능성을 근거로 인터넷 ID의 명예 주체성을 판단하는 대법원의 논리이다.

4)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거가 없을 때 또는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처분. 쉽게 말해, 검사가 사건을 ‘컷트’한 것이다.

5) 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제삼자가 위법임을 주장하고 상급 법원에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여 불복 상소를 함. 또는 그런 절차

[4-3] 이 결정에서 다수 의견은 <sup>다수설 조건1</sup> [인터넷 ID만을 알 수 있을 뿐 <sup>조건2</sup>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없다면 <sup>조건3</sup>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sup>효과</sup>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잡소리(헌법 소원)**

헌법재판소 다수 의견의 논증을 법률요건과 효과를 사용해 알아보자.

다수설	법률요건	법률효과
case1	<sup>요건1</sup> 인지(ID)	~[명예훼손 or 모욕]
	<sup>요건2</sup> ~인지(사용자)	
	<sup>요건3</sup> ~특정(피해자)	

이때 각 요건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건1과 요건2가 만족하면, 요건3이 충족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요건 사이에도 독립적이지 않은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sup>6)</sup>

[4-4] 반면, <sup>소수설</sup> [인터넷 ID는 가상 공간에서 성명과 같은 기능을 하므로 제3자의 인식 여부가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소수 의견도 제시]되었다.

**잡기술(요건)**

헌법재판소의 소수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를 논증과 법률요건, 효과를 사용해 보자.

소수설	법률요건	법률효과
case1	<sup>요건1</sup> 인지(ID)	[명예훼손 or 모욕]
	<sup>요건2</sup> ~인지(사용자)	
	<sup>요건3</sup> 특정(피해자)	

헌법재판소의 소수설은 다수설과 다르게 제3자의 인식 여부가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소수설에 따르면, 사용자를 인지하지 못해도 처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잡소리(의견 비교)**

[4-3]의 헌법재판소의 다수설은 요건과 그 효과를 지문에서 명백하게 언급했지만, 소수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 이때 독자는 스스로 요건과 효과를 채울 수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복수의 재판관으로 구성되고, 하나의 케이스에 대해 다수결로 판단한다. 따라서 다수설과 소수설은 하나의 사건에 대한 재판관들의 견해차이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통해, 필자가 굳이 지문에 서술하지 않았더라도 독자는, 다수설과 대비되는 부분을 찾아 이를 비교하여 소수설이 주장하는 법률요건과 효과를 추론할 수 있다.

6) 실제로 요건2만 충족해도 요건1과 상관없이 피해자 특정이 불가능하여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메모

14.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심층 연기는 내면의 진솔한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 형식에 집중하는 자기표현이다.
- ② 리프킨은 현실 세계보다 가상 공간에서 자기표현이 더욱 왕성하게 드러난다고 보았다.
- ③ 가상 공간에서 개별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아바타는 사이버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 익명성은 가상 공간에서 자기 정체성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가상 공간의 특성이다.
- ⑤ 가상 공간에서의 자기 정체성은 현실에서의 자기 정체성과 마찬가지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

① 심층 연기는 내면의 진솔한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 형식에 집중하는 자기표현이다.

② 리프킨은 현실 세계보다 가상 공간에서 자기표현이 더욱 왕성하게 드러난다고 보았다.

③ 가상 공간에서 개별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아바타는 사이버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익명성은 가상 공간에서 자기 정체성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가상 공간의 특성이다.

⑤ 가상 공간에서의 자기 정체성은 현실에서의 자기 정체성과 마찬가지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

길라잡이

본인만의 풀이 과정을 적어보세요!

15.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자기 정체성을 단일하고 고정적인 것으로 파악하겠군.
- ② ㉠은 ㉡과 달리 인터넷 ID에 대한 공격을 그 사용자인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고 보겠군.
- ③ ㉡은 ㉠과 달리 인터넷에서의 자기 정체성과 현실 세계의 자기 정체성이 상호 작용을 한다고 보겠군.
- ④ ㉡은 ㉠과 달리 인터넷 ID는 복수 개설이 가능하므로 자기 정체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다고 보겠군.
- ⑤ ㉠과 ㉡은 모두, 인터넷 ID마다 개인의 자기 정체성이 다르다고 보겠군.

① ㉠은 ㉡과 달리 자기 정체성을 단일하고 고정적인 것으로 파악하겠군.

② ㉠은 ㉡과 달리 인터넷 ID에 대한 공격을 그 사용자인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고 보겠군.

③ ㉡은 ㉠과 달리 인터넷에서의 자기 정체성과 현실 세계의 자기 정체성이 상호 작용을 한다고 보겠군.

④ ㉡은 ㉠과 달리 인터넷 ID는 복수 개설이 가능하므로 자기 정체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다고 보겠군.

⑤ ㉠과 ㉡은 모두, 인터넷 ID마다 개인의 자기 정체성이 다르다고 보겠군.

**길라잡이**

본인만의 풀이 과정을 적어보세요!

1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인터넷 카페의 이용자 A는 a, B는 b, C는 c라는 ID를 사용한다. 박사 학위 소지자인 A는 □□ 전시관의 해설사이고, B는 같은 전시관에서 물고기 관리를 혼자 전담한다. 이 전시관의 누리집에는 직무별로 담당자가 공개되어 있다. 어떤 사람이 □□ 전시관에서 A의 해설을 듣고 A의 실명을 언급한 후기를 카페 게시판에 올리자 다음과 같은 댓글이 달렸다.

A의 해설에 대한 후기

↳ **b** A가 박사인지 의심스럽다. A는 #~#.

↳ **a** □□ 전시관에서 물고기를 관리하는 b는 #~#.

↳ **c** 게시판 분위기를 흐리는 a는 #~#.

(단, '#~#'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표현이고 A, B, C는 실명이다. ID로는 그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알 수 없으며, A, B, C의 법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는다.)

- ① ㉠은 B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C는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겠군.
- ② ㉡는 B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A는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겠군.
- ③ ㉢와 ㉣는 A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같게 보겠군.
- ④ ㉤와 ㉥는 B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같게 보겠군.
- ⑤ ㉦, ㉧, ㉨가, C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판단한 내용이 모두 같지는 않겠군.

① ㉠은 B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C는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겠군.

② ㉡는 B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A는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겠군.

③ ㉢와 ㉣는 A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같게 보겠군.

④ ㉤와 ㉥는 B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같게 보겠군.

⑤ ㉦, ㉧, ㉨가, C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판단한 내용이 모두 같지는 않겠군.

**길라잡이**  
본인만의 풀이 과정을 적어보세요!

17.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완성(完成)된다고      ② ㉡: 요청(要請)하여
- ③ ㉢: 표출(表出)된다고      ④ ㉣: 기만(欺瞞)하고
- ⑤ ㉤: 확충(擴充)되는

① ㉠: 완성(完成)된다고

길라잡이

본인만의 풀이 과정을 적어보세요!

② ㉡: 요청(要請)하여

③ ㉢: 표출(表出)된다고

④ ㉣: 기만(欺瞞)하고

⑤ ㉤: 확충(擴充)되는